

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.

1. 정관
2. 교육 인력 · 시설 및 설비의 확보 현황
3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
4.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
5. 교육규정

**제9조(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 등)**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(변경신고서)는 별지 제12호 서식과 같다.

**제10조(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 등)** ① 법 제35조제2항제6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[<개정 2025. 1. 17.>](#)

1. 생활물류서비스의 신뢰성
2. 생활물류서비스의 친절성
3. 생활물류서비스의 대응성
4.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리적 환경의 적정성
5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(이하 "서비스평가"라 한다)를 위해 필요하면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서비스평가 시행 1개월 전까지 평가대상 · 평가기간 · 평가일정 · 평가항목 등을 포함한 서비스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시행 15일 전까지 서비스평가 대상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비스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
**제11조(생활물류 쉼터의 설치 · 관리 등)**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쉼터를 설치 및 관리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. [<개정 2025. 10. 30.>](#)

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쉼터를 운영할 때에는 생활물류쉼터를 이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. [<개정 2025. 10. 30.>](#)

③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"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은 법 제10조에 따른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등에 관한 상담 지원을 말한다.

[[제목개정 2025. 10. 30.\]](#)

**제12조(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)**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.

**제13조(수수료)**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대행 또는 수탁한 기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#### **부칙** <제1529호, 2025. 10. 3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